

인천광역시^{관광} 후원명칭 도용, 더 이상은 없다!

'내부자료' 인천광역시 후원명칭 승인행사 내역'을 시 홈페이지에 실시간 연동하여 대시민 정보공개 활성화 및 도용에 따른 시민피해 사전 예방

□ 제안 계기

○ 인천광역시^{관광} 후원명칭 도용 사례 발생

- (민원제기) 전화 제보('23.5.3.)로 '인천시' 후원명칭 도용 의심 사례* 접수

* 「Korea Asian Festival 2023」
6.17.~18, 서구 아시아드경기장,
주최(주)시리우스 미디어

- (확인결과) 인천광역시·인천관광공사·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후원명칭 무단 사용 및 시설대관 허위사실 확인



후원명칭 도용 자료('23.5.3)

- (조치결과) 주최측과 통화 불능으로 후원명칭 무단 사용 금지 공문 발송(5.8) 및 관광공사와 현황 공유

○ 인천광역시 후원명칭 상징성에 부합하는 관리시스템 필요

- '인천광역시' 후원 명칭은 300만 인구 광역시가 인정한 대회·행사라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어 민간기업·단체에게는 매우 매력적인 유인책으로 활용 가능하므로 투명한 정보관리 필요성이 대두됨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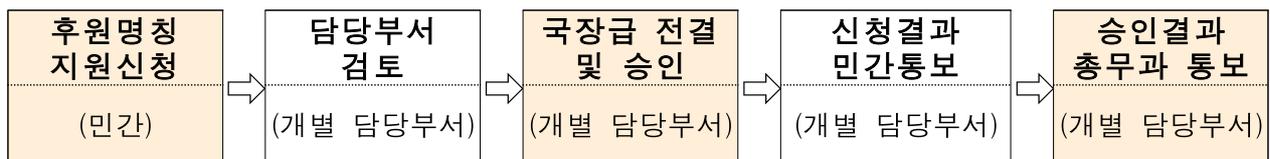
○ 인천시 후원명칭 승인행사 확인 정보창구 불투명

- 내부직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관심 행사에 인천광역시 후원명칭 지원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 담당업무로 추정*되는 부서에 개별적으로 전화 문의하거나
 - * 지원행사 후원명칭은 '인천광역시'로 표기 되어 관련부서 확인 곤란
 - 후원명칭 승인 총괄담당인 총무과에 협조 요청을 구하는 등
- 확인 절차가 번거롭고, 즉각적인 담당자 파악이 되지 않음

○ 후원명칭 지원 행사 진위여부 확인가능한 대시민 정보창구 부재

- 현재 우리시 후원명칭 사무는 각 소관부서에서 승인 검토 후 총무과에 통보하는 체제로 대국민 정보창구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 관공서 후원명칭 무단사용 단체가 활동하여도 시민들이 그 진위를 파악하기 어려워 후원 빙자 사기 발생 소지가 있음

□ [현행] 후원명칭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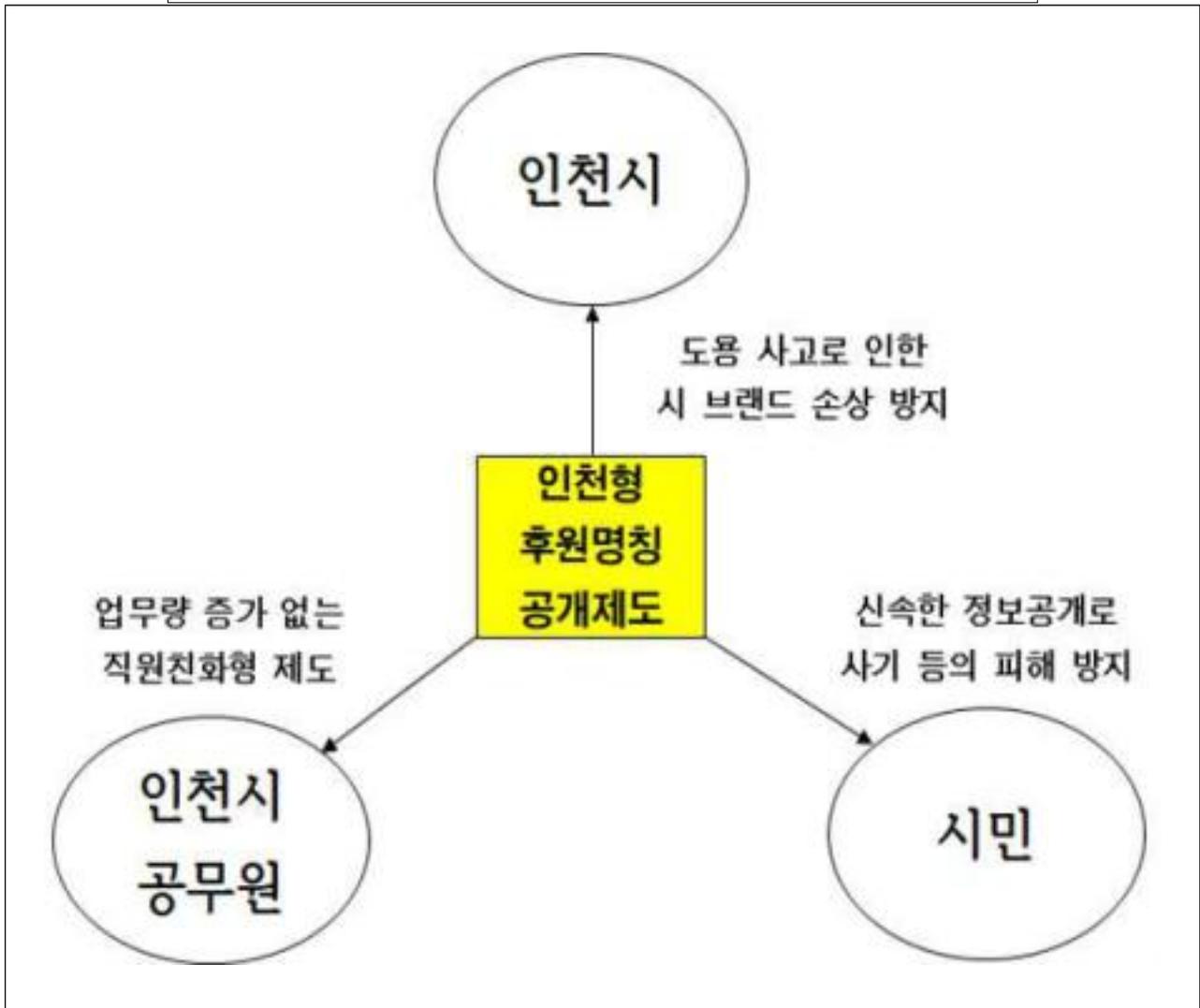
□ 개선방안(제안사항)

○ 업무정책포털-시 홈페이지 연계를 통한 정보공개 작업 일원화

- 업무정책포털 게시판과 시 홈페이지 정보공개 게시판을 연계하여 게시판에 게재한 후원 승인사항을 총무과 대국민공개 체크시 시 홈페이지 게시판에 실시간 전송되어
- 인천광역시^{관공서} 후원행사 내역이 자동적으로 게재되도록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 (말씀자료 게시판 방식)

□ 기대효과

인천형 행정혁신 일석삼조 기대효과



참고1

타 시도 및 중앙부처 후원명칭 관리 사례

□ 타 시도 및 행정기관 현황

정부조직	기관명	공개방식	시행일
중앙행정기관	보건복지부	• 운영지원과(총무과) 취합 • 분기 혹은 반기별 게재	2010년1월1일 시행
특별·광역시도	세종특별자치시	• 승인담당부서 직접 게재 • 총무과 공문 발송 후 게재	2022년6월 시행
기초자치단체	고양특례시	• 행정지원과(총무과) 취합 • 월간 게재(비정기)	2018년 시행

※ 세종특별시 외 특별·광역시도는 후원명칭 공개시스템 부재 및 확인 곤란

□ 타 시도 및 행정기관 공개 제도의 한계

- 총괄부서 취합 방식으로 정보공개 효율 저하(보건복지부, 고양시)
 - 월간, 분기 주기로 게재하기에 신속한 후원명칭 지원여부 확인이 어려우며, 무단사용에 대한 빠른 대처가 불가
- 후원명칭 정보공개 작업의 이원화(세종시)
 - 담당부서에서 총무과로 승인 통보 공문을 보낸 후 홈페이지에 다시 입력하는 작업을 거쳐야하며, 총무과는 받은 공문의 내용과 홈페이지 게재 내용이 일치하는지 수시로 관리 감독하여야함

인천시만의 차별성

승인 내역의 자동 게재 시스템 구축 및 '담당부서→총무과→홈페이지 자동 게재' 방식의 정보공개 작업 일원화로 신속성·효율성 동시 확보

인천광역시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

(제정) 2015-05-26 훈령 제 1142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함에 있어 그 대상행사, 신청 절차 및 승인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원명칭”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된 문화, 체육, 관광, 학술제 등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시의 명칭, 심벌마크, 도시 브랜드, 슬로건 등을 말한다.
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로 후원명칭 사용승인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관리부서”란 후원명칭 사용승인 결과를 통보받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상행사) ①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여 법인·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3. 시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기관 및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본래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행사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이나 인력, 행정 등을 지원하여 기관·단체가 주최하는 행사는 소관부서의 지원계획 수립으로 해당 행사에 대한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4조(신청의 접수)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후원명칭 사용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후원명칭의 사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승인을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행사계획서(신청서상 기재된 내용과 참가자의 참가조건, 입장료, 물품판매 여부, 행사 안전대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
2. 기관 또는 단체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 포함)
3.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제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 기준 및 절차)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1. 행사가 제3조 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행사 목적이 정부 정책 또는 시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
3. 행사의 안전성, 건전성, 공익성, 비영리성 여부
4. 물품 구입요구 등 각종 부조리나 사회적 물의를 초래할 소지가 있는지 여부
5. 그 밖에 소관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적합 여부

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공익상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후원명칭 사용기간 및 방법
2. 후원명칭 사용 행사결과의 보고방법 및 기한
3. 후원명칭 사용 승인사항 변경 시 통보방법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소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후원명칭이 승인된 범위를 벗어나서 사용되지 않도록 행사진행 상황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제7조(승인취소) ① 소관부서의 장은 행사준비 또는 진행 과정에서 승인한 사항을 위반하여 후원명칭을 사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또는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승인을 취소하고 향후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취소에 앞서 신청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사용결과 확인) 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행사 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후원명칭 사용 내용
2. 세부 행사내용
3. 행사참가자 인원
4. 행사결과
5. 안전사고 유무 등 그 밖의 행사에 따른 특이사항

② 소관부서의 장은 후원명칭의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다음 연도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2015-05-26 훈령 제114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